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3. 2. 16(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23. 1. 27.
- 회부일 : 2023. 1. 31. (의안번호 : 23-6)

2. 제안이유

- 마포구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까지)
-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안 제3조~제4조)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안 제6조~제7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제1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2022. 12. 29. ~ 2023. 1. 18.(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마포구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조례안 제정 취지(적정성/타당성)

○ 지속가능발전이란?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함.

○ UN 지속가능발전목표(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 인간, 지구, 번영, 평화, 동반 관계라는 5개 영역(5P)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제시하고 목표달성기한을 2030년으로 제시함.
- 빈곤퇴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 등을 포함.

-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2022년 7월 5일부터 시

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며 이 법 제1조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임.

○ 주요 위임사항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2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 5년마다 수립, 2년마다 점검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
- 지속가능성 평가 : 2년마다 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미래성장자문단 비교(운영방법)

구 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래성장자문단
구 성	- 인 원: 20명 내외 - 위원장: 부구청장 위 원: 구청장 위촉 (당연직: 區 국·소장)	- 인 원: 120명 이내 - 위원장: 위원 중호선 위 원: 구청장 위촉(당연직x)
운영방식	비상설	상설
회의개최	안전 발생 시	정기회의 연2회, 임시회의 수시
위원임기	안전 심의 기간	2년(연임가능)
주요기능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자문 - 기본전략 수립 등 법 위임사항 - 발전지표 작성 사항 - 구정 지속가능성 검토·평가 등	구정 관련 건의·자문 -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결정 - 장·단기 발전 계획 -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 등

나.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현황(23. 1. 16.기준)

- 조례제정 : 서울시 및 16개 구 제정 완료(미제정 9개구)
- 기본전략 : 서울시 및 8개 구 수립 완료

<별표 1 참조>

다.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 안 제3조~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 안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안 제8조~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조례안 구성 체계 : 총 17개 조문]

조항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12조	회의 및 운영
제4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13조	의견청취
제5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4조	경비의 지원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	운영세칙
제7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6조	조사·연구의 의뢰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7조	교육·홍보 등
제9조	위원회 구성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

본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15년 유엔(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한 이후 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현재 행정 추세에 따라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와 미래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필수위임 조례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됨

- 다만,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 할 때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 통보를 강제하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떠한 조례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인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조례안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 역할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사 위원회를 정비하여 필요 없는 조례는 폐기하고 그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정비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별표 1]

서울시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현황 ('23. 1. 16.기준)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	서울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7. 1. 5.	2022.12.30.
1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2018. 5.25.	2020. 6. 5.
2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1. 7.15.	2022.12.29.
3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7.11.17.	2022.12.30.
4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1. 6. 3.	2022.11. 8.
5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9.10.10.	2022.11.22
6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0. 4.16.	2021. 9.23.
7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2020.12.30.	-
8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1. 3.26.	-
9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17.11.16.	-
10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12.30.	-
11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12.22.	-
12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12.08.	-
13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12.29.	-
14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3. 1. 6.	-
15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12.29.	-
16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2022.12.30.	-

[별표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② (생략)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관련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관련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